

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-515호

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 
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.

2021년 12월 29일

금융위원회 위원장

- 다 음 -

1. 부수업무 신고 기관 : 나이스평가정보(주)

2. 부수업무의 신고일 : '21.12.21.

3. 부수업무의 내용

- 정보주체의 권리 대리행사
- 금융 및 비금융상품 광고
-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관련 연수·교육·출판 등
- 가명·익명정보 이용 및 제공, 데이터 판매 및 중개

\*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제6항3호, 동 시행령  
제11조의2제4항1호 및 2호, 동 감독규정 제13조의4제4항제2호 및 5호